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본 센터는 공학교육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공학교육인증 제도의 시행을 지원하고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방법을 개발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학인증 제도의 운영 및 인증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산업체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4. 창의적 공학 교육 사례 조사에 관한 사항
5. 공학 혁신 성과의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산학 협력 공동 교과과정 기획에 관한 사항
7. 해외 벤치마킹 대학의 교과과정 조사 및 인력교류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사항
8. 교육 환경 개선 방안 기획에 관한 사항
9.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 운영 및 인증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학교육인증 전산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11. 공학교육 혁신에 관한 사항
12.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인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4. 센터장 직인 관수
15. 부서별 업무 협조 사항
16. 기타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조 (센터장) ① 본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본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연구원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조직) ① 본 센터는 센터장, 각 학부(과)장, 각 프로그램 책임자(PD; Program Director), 행정실 담당 및 직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본 센터의 운영 및 주요안건 심의를 위하여 공학교육인증위원회, 교과과정위원회, 산학연전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공학교육인증위원회는 각 학부(과)장 및 각 프로그램 PD로 구성한다.

④ 교과과정위원회는 각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한다.

⑤ 산학연전문위원회는 각 학부(과)에서 추천한 5인 이상의 교수,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의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하며 산학협력의 활성화에 따라 그 인원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자체평가위원회는 각 학부(과)에서 추천한 5인 이상의 교수, 산업체 및 연구

기관 등의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한다.

- 제5조** (위원회별 업무) ① 공학교육인증위원회는 공과대학에서 추진하는 5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항공우주기계공학, 전자항공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정보공학, 항공재료공학)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 확보, 인프라 구축, 설문조사, CQI 보고서 관리, 자체 평가를 담당한다.
- ② 교과과정위원회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추진과 동시에 산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공 track 개편, 교과과정 개편 및 평가, 교수학습법 개발, 교육방법 및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 연구, 학습성과 분석 및 조정, 평가도구 개발 등을 담당한다.
- ③ 산학연전문위원회는 본 센터 사업의 취지에 입각하여 산업계의 공학교육 방향과 내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과목 개편의 방향을 설정하고, 산업계와 공동으로 Co-op 프로그램 개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학제적 캡스톤 디자인 교육의 기획 등을 담당하게 된다.
-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본 센터 사업의 추진 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다.

제6조 (사업계획 및 예산서) 센터장은 본 센터의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년도 개시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사업보고 및 결산서) 센터장은 본 센터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규정) 이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혁신센터 규정」은 폐지한다.